

등록번호	푸른도시과-26096
등록일자	2014. 12. 29.
결재일자	2014. 12. 2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자연생태팀장	푸른도시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
김건홍	박종철	양종수	12/29 이명균
협 조	안전치수과장 신현태		

제2차 2014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



서 대 문 구
푸른도시과

제2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결과 보고

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임

I 개 최 개 요

- 일 시 : 2014. 12. 24(수) 15:00
- 장 소 : 안전건설교통국장실
- 참 석 자 : 안전건설교통국장 외 7명
 - 외부위원(6명) : 정상섭(연세대학교), 우종태(경북대학교), 이명호(산림조합중앙회), 이동균(강림기술사사무소), 최광숙(연희동 22통장), 김경숙(홍은 2동 29통장)
 - 내부위원(1명) : 안전건설교통국장
 - 간사(푸른도시과 담당직원)
- 심의내용 :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·해제의 적정성
- 심의안건
 - 해 제 : 홍은동 산1-98 외 19건
 - 지 정 : 홍은동 산1-57 외 24건

II 심의결과 및 주요의견

- 심의결과

심 의 번 호	심 의 안 건	심 의 결 과
제2014-21호	홍은동 산1-57 지정	원안의결
제2014-22호	신촌동 산9-82 지정	원안의결
제2014-23호	연희동 1-141 외 3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24호	연희동 산118-5 지정	원안의결
제2014-25호	연희동 141-29 지정	원안의결
제2014-26호	연희동 산118-5 지정	원안의결
제2014-27호	연희동 520-252 의 7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28호	연희동 산2-15 지정	원안의결

심 의 번 호	심 의 안 건	심 의 결 과
제2014-29호	연희동 산118-1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0호	연희동 산2-13 외 1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1호	현저동 107-487 외 1개 필지 지정	부결
제2014-32호	현저동 101-320 외 3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3호	홍은동 산11-96 외 1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4호	홍은동 산21-8 외 6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5호	홍은동 산1-509 외 1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6호	홍은동 산1-482 외 1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7호	홍은동 산23-147 외 1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8호	홍제동 산37-55 외 1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39호	홍제동 76-16 외 19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40호	홍제동 산1-52 외 7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41호	홍제동 460-5 지정	원안의결
제2014-42호	홍제동 산37-54 지정	원안의결
제2014-43호	홍제동 312-158 외 4개 필지 지정	원안의결
제2014-44호	홍제동 9-83 지정	원안의결
제2014-45호	홍은동 산1-64 지정	원안의결
결 과	○ 원안의결 : 44건 ○ 부 결 : 1건	

※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건은 보류

Ⅲ 조 치 계 획

- 심의 안건 중 지정에 관한 사항 외의 건은 위원회에서 검토가 어려운 사항임
향후 위원회 안건 상정 시 지정에 관한 것만 상정하겠음

○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여부,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(차후 상정)
2.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(사방사업)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미상정)
3.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(미상정)
4.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·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(미상정)
5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및 조례 상 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차후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, 사방사업이 완료된 후 해제를 하겠음

○ **산림보호법**

- 제45조의8(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)

-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- 원안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사방사업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고시를 하고자 함

붙임 1. 산림보호법 1부
2. 관련조례 1부. 끝.